

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11. 9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라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씨엠비씨 등 3개사
 - (2012-61(서)-243)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엠비씨 및 (주)한국여론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, (주)폴라리스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방송분야	대표자	최다액출자자(지분율)	납입자본금(실질자본금)
(주)씨엠비씨	티엘씨코리아 (TLC Korea)	TV	생활문화	이한담	이한담(70%)	15.0억원 (30.7억원)
(주)한국여론방송	에치피비에스 (HPBS)	TV	리서치정보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	진영선	진영선(50%) 조대엽(50%)	5.0억원 (5.6억원)

<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 : 방송분야	
			변경 전	변경 후
(주)폴라리스방송	폴라리스 TV (Polaris TV)	TV	여행·레저	여행·레저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
나.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2012-61(서)-244)

-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에 의거,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[Biz Premium HD(업소용 프리미엄 패키지) 신설]

< 승인 내용 >

상 품 명	채널 구성내용	이용요금	비고
Biz Premium HD (업소용 프리미엄 패키지)	비디오 총 169개 채널 (HD 82개, SD 87개 채널) 오디오 총 31개 채널	10,000원 (월정액)	기존 Biz Plus HD상품(8,000원)에 12개 채널 추가

다. 선거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

- (주)문화방송 - (2012-61(서)-245)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위원회가 명한 (주)문화방송의 'MBC 뉴스데스크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2.11.2)에 대한 원심 집행정지 신청('12.11.2)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심 청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의결함

【 원심결정의 개요 】

▪프로그램명	MBC-TV 'MBC 뉴스데스크' [2012.10.1.(월), 20:55-21:55]
▪제재 조치 처분명령	경고
▪주요 위반 내용	<p>○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논문을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,</p> <p>- 서 교수 논문과 안 후보 논문을 비교하며, “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습니다”, “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는 지적입니다.”라는 내용,</p> <p>- “안 후보가 참여한 연구팀의 논문이 다른 후배의 1992년 논문을 베껴 써서 한국 과학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착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”, “이런 의혹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”라는 내용 등</p> <p>- 제대로 된 반론권 제공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 소개 없이 제기된 의혹 위주로만 전달하고, 본 내용과 관련 없는 논문을 표절대상 논문으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</p>
▪관련 규정	「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」 제5조(공정성) 제1항, 제8조(객관성)제1항

라.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61(서)-246)

○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, 회계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한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통신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완화

(1) 영업보고서 제출사업자 기준 완화

-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기간통신 매출액 100억원미만의 사업자는 간이보고*로 대체할 수 있음

* 간이보고는 전체 영업보고서 중 2종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의 서식만 제출

- 간이보고 대상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자의 회계작성 부담을 경감함

(2) 상반기 회계자료 제출 의무 폐지

-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제출 외에도 통계보고의무에 따라 상반기 회계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함

- 상반기 회계자료는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상 활용도가 높지 않고, 각 사업자의 IR자료로 대체활용이 가능하므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함

(3) 서비스 통합

- 기간통신역무의 세부서비스(총 28개) 중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함

현 행		개정안
o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	o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	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
o 위성휴대통신서비스	o 위성통신서비스	위성통신서비스
o 무선호출서비스	o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	기타서비스에 포함

② 회계규정 현행화

(1) 신규서비스 회계 분리

- 서비스별 접속료 및 도매대가 산정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정보 확보를 위하여, 'LTE 서비스'를 기존 3G서비스(IMT2000)와 별도로 신설함

(2) 수익항목 신설

-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산에 따라, 요금제별 수익현황 파악 등을 위해 요금수익을 '정액제 요금수익'과 '종량제 요금수익'으로 구분함
- 전기통신도매제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수익항목에 '도매제공수익'을 신설함

(3)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규정 개선

- 이동통신서비스(IMT2000 등)의 구분기준을 사용주파수 대역에 따른 구분에서 국제표준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함

o 향후 일정

- '12. 11월 관보게재 및 시행('12년 영업보고서 작성 시부터)

3] 보고사항

가.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 내용

① “일간신문 구독률” 정의규정 명확화

- 현행 고시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모수를 '직전년도 총가구수'로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방송법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'직전년도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수'로 명확화

②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단위 자릿수 명확화

- 현행 고시는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부 수치의 자릿수를 명시하지 않아,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산정의 정확성·효율성 제고

○ 향후일정

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: '12. 11.
- 위원회 의결,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. 12.